

# 『한국자산관리공사-협력재단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창업 벤처기업 및 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출연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1

#### 사업 개요

- (목적) 창업·벤처기업 및 분사창업기업 마케팅 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 (지원내용)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마케팅 지원(100%)
- (지원규모) 2개社 선정, 기업 당 4백만원 지원  
-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마케팅 지원(100%)
-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 (신청기간) 2024. 10. 7(월) ~ 10. 23(수) 18시까지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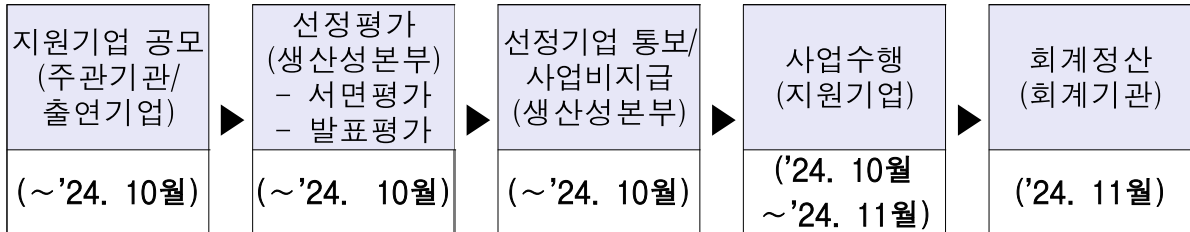
□ (신청접수) 신청서류 스캔본 E-Mail 제출

추진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한국생산성본부 (주관기관)	글로벌스타트업센터	조희수 연구원	02-398-6404	kpcstartup@kpc.or.kr (생산성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동반성장팀	장진희 차장	051-794-3236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수행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추진 일정 / 해당 일정은 변경 가능



\* 회계정산을 통한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동일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생산성본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 지원사업 선정평가기준

## ○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점				
			S	A	B	C	D
기술성 (30)	공고내용과 적합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내용에 적합한 중소기업인지 여부</li> <li>■ 공고내용에 적합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여부</li> </ul>	5	4	3	2	1
	필요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내용에 따른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시급성</li> </ul>	10	8	6	4	2
	혁신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성 또는 기존 기술 또는 아이템과의 차별성</li> <li>■ 기술아이템의 모방 가능성 및 방지전략 여부</li> </ul>	10	8	6	4	2
	계획의 구체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li> <li>■ 기술개발 및 구현방법의 신규성</li> </ul>	5	4	3	2	1
사업성 (40)	사업화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 가능성</li> <li>■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의 유무 (Exit 계획 포함)</li> </ul>	15	12	9	6	3
	글로벌 진출역량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성공가능성</li> <li>■ 해외 파트너 확보, 해외법인 설립,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글로벌 진출 여건 마련</li> <li>■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li> <li>■ 해당 국가 및 시장, 경쟁사 제품 등 분석 여부</li> </ul>	15	12	9	6	3
	고용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총원계획 등 신규 인력 채용 가능성 및 참여인력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운영 여부</li> <li>■ 해당 업종 또는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파급효과</li> </ul>	10	8	6	4	2
사업수행 역량 (30)	출연기업과 협력계획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방안 등의 여부</li> <li>■ 출연기업과 기술적, 업무적 협력방안</li> <li>■ 출연기업 협업 가능성</li> </ul>	25	20	15	10	5
	팀원 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의 적절한 역할 배분 여부</li> <li>■ 인력 보유 및 투자 역량</li> </ul>	10	8	6	4	2
<b>합 계</b>							
평가 의 견	[검토의견] [보완내용]						

붙임 :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끝.